

2018년 건강검진 시행 계획

□ 목 적

- 지속적인 정기검진을 통한 직원의 조기질병 발견 및 건강수준 제고
- 법적 Risk 해소 및 건강한 일터 구현

관련근거

-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(건강검진)
-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(건강진단)
- 단체협약 제72조(건강진단)

□ 개 요

- **검진기간** : '18.4.23 ~ '18. 10.31
- **검진대상** : **32,392명**(직원 23,606명, 배우자 8,786명/ '18.3.2일 기준)
- **검진일정** ※ 신청경로: KATE → Easy ERP → HR → 개인업무 → 복지후생 → 신청 → 건강검진

주요 내용	일정	비고
· 2018년 건강검진 전사공지	3.23	전사담당자
· 계약 검진기관 ERP 등록	3.23~3.27	기관담당자
· 건강검진 대상자 시스템 입력	3.27	전사담당자
· 개인별 검진기관 및 검진항목 신청	4.2~ 4.14	개인별
· 건강검진 시행	4.23 ~ 10.31	개인별
· 정산 및 검진결과표(사후관리소견서)관리	11.1 ~ 11.30	기관담당자

○ 검진비용

구분	검진비용	검진인원
만 50세 이상 (A형)/ ('68.12.31 이전)	30만원	10,564명
만 35세~50세 미만 (B형)/ ('69.1.1 ~ '83.12.31)	20만원	10,655명
만 35세 미만 (C형)/ ('84.1.1 이후)	15만원	2,387명
배우자 만 50세 이상 (D형)/ ('68.12.31 이전)	30만원	3,431명
배우자 만 50세 미만 (E형)/ ('69.1.1 이후)	15만원	5,355명

☞ 배우자: 직원 건강보험증에 등재 및 ERP 內 의료비 대상 등재된 배우자 限 (등재마감 기준일:'18.8.25)

※ 제외대상: 재적전출자, 신입사원, 임시/파견계약직, '18.1.1일 이후 입사자

□ 주요 추진내용

○ ERP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청기간내 검진 수검율 100% 달성

- ERP 시스템내 신청없이 직접 검진예약/시행 불가(검진병원 온라인/전화 등 신청 불가)
- 기관별 검진 제외자 확인 철저 (누락자 및 미검진자 발생 사전 차단)

※ ERP 시스템 개선 내용

구 분	주요내용
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강화	직원/배우자 검진 신청시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한 법적 Risk해소
퇴직예정자(배우자 포함) 등록	검진대상자(직원/배우자) 등록시 당해년도 퇴직예정자를 포함하여 퇴직자 care 추진
특수 검진자 관리 시스템화	ERP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검진 현황 및 결과분석으로 정확한 사후관리 가능
검진비 정산업무 간소화	전사 담당자를 통한 검진비 정산 방식을 조직담당자가 직접 정산 가능

○ 특수검진 병행 시행 추후 별도 문서 발송

- 대상: 밀폐공간(맨홀) 작업자, 야간(교대) 근무자
- 특수검진 대상자는 특수검진 가능병원 선택(희망시 일반검진기관 선택가능)
- 건강검진 완료에 따른 ERP 검진시스템 구축(시스템 현행화)

○ 심리적 위험군 발굴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적극 권장

- ERP 검진신청시 팝업으로 스트레스 검사 참여 안내 ('17년 18,800여명 참여)
 - 조직별 검진담당자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 적극 참여 요청 (목표 : 2만명)

○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우수한 검진기관 선정

- 공단 지정 검진기관 중 5대암 검진 가능 기관(위암·간암·대장암·유방암·자궁경부암)
 - 검진의 연속성 및 검진항목을 고려하여 지난해 기관 우선고려
 - 건강검진 서비스 품질, 직원 검진만족도를 통해 기관 수 조절가능
- ※ 병원 지정시 노사협의 必

○ 과태료 부과 등 법적 Risk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정 준수 산업안전보건법

- 기관별 건강진단결과표 보관 철저(기준: 사업장별 5년 보관)
- 2차 검진 소견(고혈압, 당뇨 등) 직원에 대한 2차 검진 철저 시행